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108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김용태·박정하·서천호

조은희 · 서지영 · 조정훈

백종헌 • 이성권 • 김소희

우재준 • 정성국 • 강대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주의 국제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아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국제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위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학교의 장이 '학교 운영상 정할 수 있도록한 사항'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28조제3항).

법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8조제3항에 제6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 7.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8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①	제228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제학교의 장은 대통령령	3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
	<u>한 사항</u>
	7.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
	<u>한 사항</u>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